

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-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기위함.

2. 관계법령

-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
-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 내지 115조

3. 주요골자

- 위 원 장 : 구청장 → 부구청장
- 부위원장 : 부구청장 → 위원중 호선
- 위 원 수 : 15 ~ 25인이내
 - ▶ 현17명 :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3조 제1항
- 분과위원회구성 :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건은

- 2003년 1월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시행됨에 따라 기히 설치 운영 되고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함이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
- 특히 관련법에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사회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